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30
----------	--------

제출년월일 : 2025.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추가(안 제6조제5호)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신설(안 제8장)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31조)
-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규정 신설(안 제32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규정 신설(안 제3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부칙 제2조)

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이동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재산세과 업무 협의 완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9. 4.~9. 24.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하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8장 선정 대리인을 신설하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u>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u>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제8장 선정 대리인</u> <u>제31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의 청구인 또는 법 제90조에 따 른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 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 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 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영 제62조의2제2항제 2호 각 목에 따른 소유 재산 평 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 <u>제32조(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u>

등) 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신 설>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u>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u> <u>제31조 ~ 제33조 (생략)</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u>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u> <u>제34조 ~ 제36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u>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김동민
연 락 처	02-3153-8191